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 량	취득경위		
규격		반출 전 소유자	반출방법 [] 구입 [] 기증		
목적					
반출국가					
보험방법					
반출예정 연월일					
반출 담당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반출 중 보호방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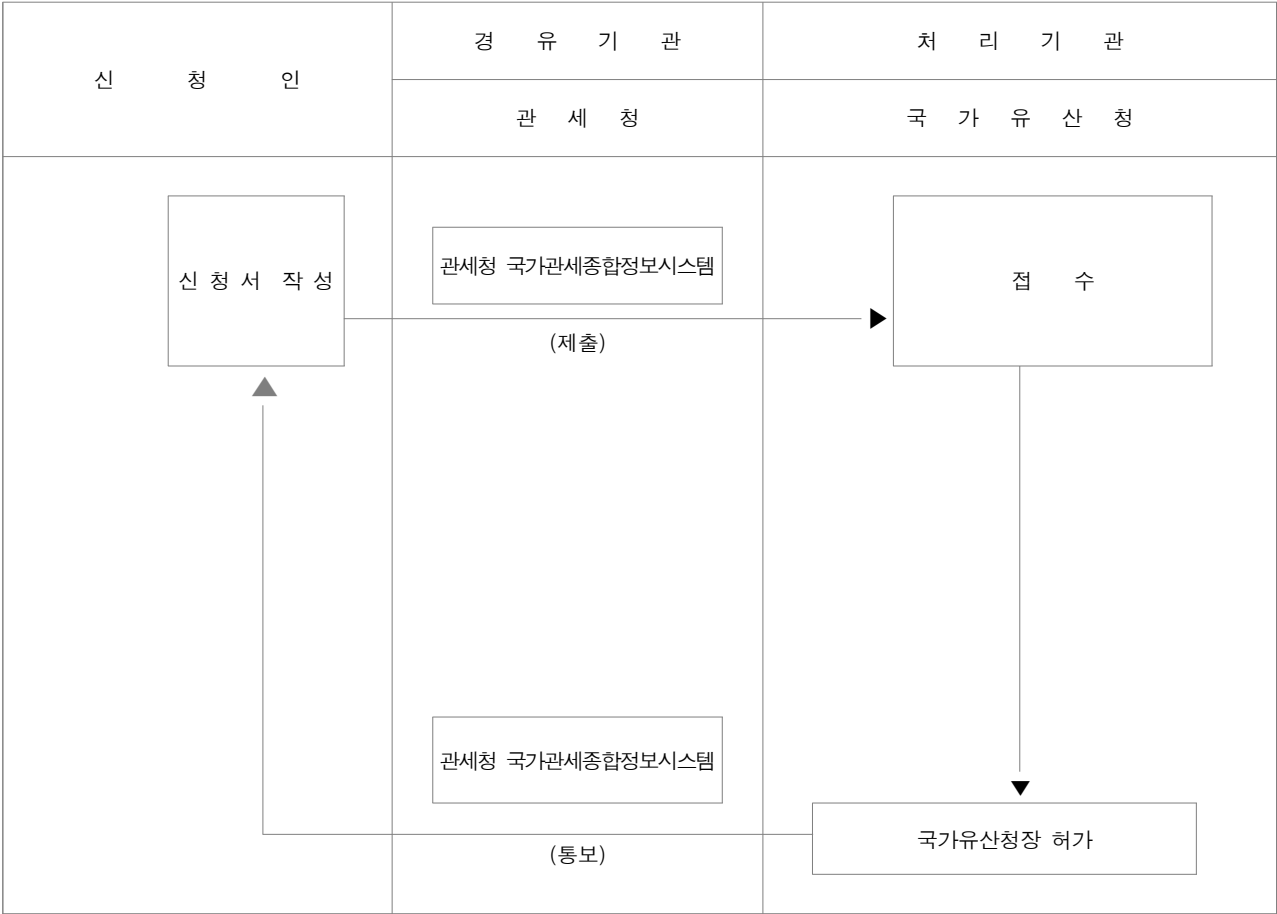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2. 문화유산 반출국가 인증서 3. 보험증서 사본 4.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연구계획서(전시 또는 조사·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